

제 호

어구생산업 · 어구판매업 신고증

1. 성명(대표자):
2.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3. 사업장의 명칭:
4. 사업장의 소재지:
5. 사업의 유형(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):

「수산업법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또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· 어구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